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39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 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 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 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3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u>아</u>	<u>o</u> }		
<u>니한 자 <단서 신설></u>	<u>니한 자.</u> <u>다만, 「지속가능한</u>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u>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